

「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10월 10일

나. 제출자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10월 10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10월 17일

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도시건설국장 변 상 용

나. 제안이유

-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현재 지원되는 전세금 융자금액이 부동산 시장 현실에 맞지 않아 지원대상이 입주 대상지를 선정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저소득층 전세금 용자 지원사업의 지원금액 상향조정(안 제16조제1항)
 - 당초 : 지원금액 1세대당 6천만원 이하
 - 변경 : 지원금액 1세대당 1억원 이하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주택법」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기 동

○ 본 조례안은

- 저소득층 전세금 용자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부동산 시장 현실에 맞게 저소득층 전세금 용자 지원액을 인상하여 지원대상자가 입주 대상지를 선정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세금 용자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